

# 유 학(D-2)

##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

- (교육기관) 「고등교육법」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
  - (제외)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
    - i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원격대학)
    - ii)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    - iii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'직업 훈련과정'
    - iv)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\*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
- \*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,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
- (외국인 유학생)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(D-2) 및 어학연수(D41, D47)
- 적용대상별 세부약호

약 호	약 호	대 상 자
학위과정 (D-2)	D-2-1	전문학사과정
	D-2-2	학사과정
	D-2-3	석사과정
	D-2-4	박사과정
	D-2-5	연구과정
	D-2-6	교환학생
	D-2-7	일-학습연계 유학
	D-2-8	방문학생
어학연수 (D-4)	D-4-1	한국어 연수
	D-4-7	외국어 연수

##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

2년

##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

- 외교(A-1) 내지 협정(A-3), 문화예술(D-1), 일반연수(D-42), 취재(D-5) 내지 무역경영(D-9), 교수(E-1) 내지 특정활동(E-7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동거(F-1) 내지 결혼이민(F-6), 난민신청자(G-1-5), 인도적체류허가(G-1-6), 방문취업(H-2)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(D-2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

※ 원래의 체류목적에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

※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: 합법 체류자(체류자격 불문)

	<p>※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난민신청자(G-1-5)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,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(D-2)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, 출국 후 사증(사증발급인정서) 발급 받아 입국 가능</p> <p>○ 관광취업(H-1)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. 단, <u>호주, 대만, 아일랜드, 덴마크, 캐나다, 홍콩</u>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 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</p> <p>호주 :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, 대만 :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, 아일랜드 :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, 단,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, 덴마크 :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, 캐나다 :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, 홍콩 :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</p>
<p><b>체류자격외 활동</b></p>	<p><b>1.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</b></p> <p>○ (허가대상) 석·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'학생연구원'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</li> <li>ii)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</li> <li>iii)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연구원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(UST),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</p> <p>○ (제출서류) 고용계약서,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수수료</p> <p>○ (주의사항)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(D-2)의 일반 기업(대학 산학협력단 포함)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,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</li> <li>-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,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</li> </ul> <p><b>2.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</b></p> <p>가. 기본원칙</p> <p>○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</p>

※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[별표1-2]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(예시,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, 호화지도강사, 전문통번역 등)

※ 개인과의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,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 
**【허가절차】**

고용계약서 작성	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	신청	허가, 불허
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(표준근로계약서, 시급기재)	별지서식,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	첨부서류,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	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

**나. 대 상**

-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
  -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-2-1~D-2-4, D-2-6, D-2-7 해당자
  - 어학연수(D-4-1, D-4-7)자격 및 방문학생(D-2-8)자격 변경일(사증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
- 유학과정 경과(전문학사 2년, 학사 4년)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
  - 다만, 석·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미달,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
- ☞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

**다. 허용범위**

**<한국어 능력별, 학위과정별 허용시간('23. 7. 시행)>**

과정	학년	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, ②사회통합프로그램, ③세종학당		시작 시기	허용 시간		인증대학·성적우수, 한국어우수 (주중)
					주중	주말방학	
어학연수	-	① 2급	X	6개월 이후 가능	10시간		10시간
		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	○		20시간		25시간
		③ 초급2 이상 이수					
전문학사	-	① 3급	X	즉시 가능	10시간		10시간
		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	○		25시간	무제한	30시간
		③ 중급1 이상 이수					
학사	1~2학년	① 4급	X	즉시 가능	10시간		10시간
	3~4학년	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	○		25시간	무제한	30시간
석·박사	-	③ 중급2 이상 이수	X	즉시 가능	15시간		15시간
			○		30시간	무제한	35시간

※ 영어트랙 과정 :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1점(NEW TEPS 327점) 이상 자격증 소지자,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

**□ 목차**  
**체류자격의 활동**

**□ 목차**  
**체류자격외**  
**활동**

<허용분야(예시)>

- 일반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  - ※ 단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-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,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
  - ※ 단,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(KIIP 4단계 이수)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-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
-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(D-2) 유학생의 전문분야(E-1~E-7) 인턴\*활동(단,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)
  - \*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(E-1~E-7)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

<장소변경> :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<허가 기준 등>

- 제한대상
  -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% 미만이면 제한)
  - 불성실 신고자 :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, 신청사항(장소, 근무시간 등)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(내부기준)
  - 직종제한 : E-1 ~ E-7 전문분야, E-9, E-10 비전문분야
  -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\*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(단,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,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(회화지도(E-2) 활동은 제외)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(마약검사 결과 포함)를 제출하는 경우)
    - \*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, 외국어회화학원 등
  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형태 제한
    - ① 택배기사, 배달대행업체 라이더, 대리기사, 보험설계사, 학습지

**□ 목차**  
**체류자격외**  
**활동**

교사,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

② 파견, 도급,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

③ 원거리 근무

○ 처리요령

- 어학연수생(D-4)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, 장소 1곳 한정

- 유학생(D-2)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

라. 신청서류

○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

○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(붙임3),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(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같음),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, 표준근로계약서

○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(붙임4)

마.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(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)

○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,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

바.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

○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, 입국규제는 유예

사.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 활동

○ (소속대학 내 연구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,

i) 학업과 연계된 연구·인턴 참여: 시간제취업허가 면제

ii) 학업과 무관한 연구·인턴 참여: 시간제취업허가 필요

○ (소속대학 외 연구활동)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,

i) 학업과 연계된 연구·인턴 참여: 시간제취업허가 필요

ii) 학업과 무관한 연구·인턴 참여: 체류자격외활동허가(E-3) 필요

야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 활동

○ (대상활동)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고시 제2022-1호)

제2조에서 규정한 '표준 현장실습학기제' 및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'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'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(단,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)

### 3. 유학생(D-2)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

-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해 자격외활동허가 후 취업(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 활동 제한)

#### 근무처의 변경·추가

- 해당사항 없음
- ※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(D-1),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 자격소지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(명칭변경 포함)과 취재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(시행규칙 제49조의 2)

#### 체류자격 부여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체류자격 변경허가

### 1. 유학(D-2) 체류자격 변경허가

가. (기본원칙)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, 단기체류자(B, C 계열 자격)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. 다만,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

- ①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(D-3),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인도적체류허가자(G-1-6)를 제외한 기타(G-1)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
- ② 단, ①단기 합법체류자로서 ②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, ③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예외적으로 허용

<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>

현 체류자격		국적	일반국가	고시 21개 국가 + 중점관리 5개 국가	
단기	B1/ B2		○	×	
	C-3	C31/C34	인증대	○	×(19.6.11 변경)
			비인증대	○	×
	C38		○	○	
	C32~C33/C35~7,C39~10		×	×	

나. 허가권한 :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

다. 제출서류

#### 공통서류

- ① 신청서(별지 제34호 서식), 여권, 사진 1매, 수수료
-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
- ③ 표준입학허가서 (대학 총·학장 발행)
- ④ 결핵진단서 (해당자에 한함)
-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(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)